

1.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4월 2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상정일자 :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4월 15일), 수정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지난해 12월 22일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개정할 경우 대구경찰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위원 임명을 위해 위원의 자격 및 결격 검증을 위한 자료를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5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명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비상임, 5명)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수립 절차를 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제정 조례안은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 ▶ ‘자치경찰제’¹⁾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위 법의 개정과 전면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넓은 영토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로 구성된 합중국이라는 것임.
-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출범과 함께 자치

1)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본격화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19년 2월 경찰을 조직·사무·예산 등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하게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하였고,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의해 '이원화 모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음.

- ▶ 이후, '이원화 모델' 추진에 따른 인력충원과 조직개편을 위한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에 의해 '일원화 모델²⁾ 법안'이 대표 발의되었고, 상임위 심사과정 논의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2021년 7월 1일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예산편성의 간소화, 경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강화 등을 들 수 있고,

2) **일원화 모델** : 현재의 국가경찰체계를 유지한 채 사무구분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형태, 자치경찰의 신분 역시 국가직공무원으로 규정

지방 도착세력과의 유착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자치경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미흡 및 지역별 재정역량에 따른 지원 격차 등의 우려도 언급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 제2조의 범위 기준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을 포함한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별표 1]을 개정하거나, 기타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토록 하여 법 제28조 제3항³⁾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유기적 연계성도도모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제1항에서 [별표 1]의 생활안전사무 중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제1호마목⁴⁾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3)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제24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기획업무
- 마. 지하철경찰대 운영지도

현재 대구시는 지상철(모노레일) 개통에 따라 도시철도 1, 2, 3호선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철도법」에서도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위 법과 조례의 정비를 통해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별표 1]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 (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또한, 제2항의 강행규정(~들어야 한다)은 치안여건과 인력·장비 등을 고려한 자치경찰사무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상호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는 하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의 침해로 해석 될 소지도 다소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감사 계획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립·실시토록 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영 제2조제3호5)에서는 중복감사의 방지 외에도 상호협력과 연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5)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대구시 감사관 소관 조례 등과 견주어 조명의 변경과 외부 전문가 도입 등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자치경찰사무의 감사)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경기도 감사관 또는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8조(감사단의 구성) ③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적격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임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4. 합의제행정기관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 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비고 :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 ▶ 안 제6조에서는 의안 발의와 상정 절차를 규정하고, 회의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에서 명시하였음.
-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영 제16조6)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간사를 맡는 것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 ▶ 안 제13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50일)의 30일전(8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음.

6)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의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조명(條名)에서 사용한 ‘담당’과 조문(條文)에서 사용한 ‘수행’의 해석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7)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8)’외에도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지원 명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재원분담을 증가, 소방공무원 증원 소요액 충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방법과 대상, 재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장의 의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규정하였음.

7)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8) 2021. 1. 21. 기준 : 대구경찰청 산하 경찰공무원 현원 - 5,869명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 1,003명 (17%)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 제정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 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상위 법령과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시행 주체가 불명확한 피동형의 문장을 다소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이견이 없음.
- ▶ 다만,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에서 언급한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14조의 미비점은 대구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법 제5조9), 제19조10), 제24조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12) 등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치안 행정을 구현토록 하여야 할 것임.
- ▶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서민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후생복지 경비 등의 국비지원에 있어

-
- 9)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 12)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 시·도와 연계·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적절한 인력
안배와 역할구분 등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이점은?</p> <p>○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의회의 감독범위는?</p>	<p>○ 두 기관 모두 대구시 산하에 있지만, 소방본부는 독립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임.</p> <p>○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감독할 수 있음. 다만, 대구경찰청은 국가경찰조직이므로 직접적인 감사는 어렵고 자치경찰사무에 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감사할 수는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의회 출석요구도 가능함.</p>
<p>○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시장에게 부여되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임. 경찰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 지휘·감독상의 혼란도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p>	<p>○ 책임행정의 부분에서 시장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겠지만, 입법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음.</p>
<p>○ 경찰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시민들도 과연 밀착행정이 가능할지 우려를 하고 있음. 또한 민주적 정당성, 지휘·감독 체계의 혼란, 지역특성 미반영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7분의 위원을 선임할 때, 시민단체, 학계, 여성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고, 별관 청사에 시민소통공간도 배치하여 기능적으로 시민들의 제언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또한, 제도상 미흡한 부분은 상위법 개정 등을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사유는?</p>	<p>○ 생활안전, 가정폭력 등 주민과 밀접한 치안부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임.</p>

질 의	답 변
○ 일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이원화 모델을 도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권력 분산에 초점을 두고 우선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는데, 시행 전·후의 차이점은?	○ 자치경찰이 기존의 경찰과 제복도 달라 하여 지역민들에게 친숙함과 함께 민생 경찰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올라갔다는 평가임.
○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는 경찰청 의견을 대구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조치는?	○ 유권해석 결과 형식상 강제규정으로 보이지만, 의견 수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추진현황과 구성 시기는?	○ 위원회 구성 방법 상 특정 성을 지정하여 추천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현재 남성 5명, 여성 2명을 위원으로 추천 받았으며, 5월경 위촉 예정임. 참고로 강원도와 대전광역시는 전부 남성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4조를 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는 제외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 아닌지?	○ 경찰청, 경찰서와는 달리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지방 토호 세력의 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중 1명이며, 각 위원들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하여 최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비용만 부담토록 되어 있음.

질 의	답 변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재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도 없이 일만 번거러워지는 것이 아닌지?	○ 자치경찰제도 초기설계 과정과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사무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경찰청 간의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하여 안 제2조의 자구와 안 제3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붙임 '위원회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중 “들어야 한다” 를 “청취한다” 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을 “(중복감사의 방지)” 를 “(자치경찰사무의 감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대구광역시 감사관 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하기 위해 미리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감사)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대구광역시 감사관 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 규칙(이하 “위원회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요청으로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이외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경우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에게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

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 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법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 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 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해자·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 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해·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 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p>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p>	<p>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해자·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p>
	<p>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p>	<p>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가해·피해 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 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p>
	<p>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p>	<p>①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p>
	<p>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5)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p>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p>	<p>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지도 및 홍보 등</p>
	<p>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p>	<p>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p>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그 밖의 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그 밖의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 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점검·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 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지원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 폭 초과 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p>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p>	<p>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p>
	<p>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p>	<p>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p>
<p>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p>	<p>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p>
	<p>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p>	<p>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p>
	<p>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p>	<p>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p>
	<p>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p>	<p>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p>
	<p>마) 지역 내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p>	<p>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p>
	<p>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p>	<p>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p>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수당의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 150,000원 · 초과: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